성주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 안 자 : 성주군수

2. 제정이유

○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령)이 개정('17.10.17)됨에 따라 성주군이 수행한 정책연구용역의 결과물을 공개하도록 하여 연구결과의 신뢰성과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용역 적용범위(안 제3조)

- 성주군에서 추진하는 모든 정책연구용역
- 적용 제외대상

·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
·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과 감리용역
·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용역
· 기술 및 디자인·전산·임상연구·회계, 설문조사 등 일반 용역

○ 연구결과의 공개 등(안 제4조)

- 용역 종료 후 용역결과물을 '정책연구관리시스템'에 공개
- 비공개 대상

·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
· 공개될 경우 성주군의 정책·시책·사업 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 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
○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○ 성별영향평가 분석 : 개선사항 없음〔주민복지과-38735(2018. 7. 9.)〕
○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○ 입법예고 : 의견없음 (예고기간 : 2018. 8.23.~2018. 9.12.)

5. 검토의견

○ 본 제정조례안은 행정기관 간 협업을 촉진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인 “행정 효율화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”에서 정책연구결과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위임하고 있음에 따라 그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을 제정하는 것으로써

○ 이와 관련하여 조례의 목적, 용어의 정의, 적용범위, 연구결과 공개 및 비공개대상, 연구결과의 활용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

○ 법리 검토결과,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정책연구용역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·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